

2016. 10. 19 개정

2019. 1. 1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134호 (2018.10.10)

『건설 하나로 통장』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“건설 하나로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1.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
2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
3.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
4. E-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

제 4 조 필수요건

이 예금에서 제공하는 금리 우대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월 평잔 50만원 유지 시
2. 이 예금에서 KEB하나은행 적금상품으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3.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[※] 시

(주) 급여이체 인정기준	
인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원화계정)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 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(급여일 사전 등록)
금액	● 최소 건당 50만원
제외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, 다음의 경우 제외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(단, 창구거래 중 급여 다건 입금은 인정) -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 ● 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●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(예시: 예금주명 적요)

제 5 조 이자지급

- ①.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(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)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(이하 '원가일'이라 함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②. 제 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.
- ③. 이 예금 매일의 최종 잔액 중 0 ~ 100만원 구간에 대해서 원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2개월 이상 제 4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며, 우대금리 적용 시 제 2항의 기본금리를 제외하고 적용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
제 6 조 수수료 우대

- ①은행은 가입 다음월부터 제 4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월 10회 제공합니다. 단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 I 대상거래)

1.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2.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- ②은행은 가입 다음월부터 제 4조의 필수요건 1건 포함 아래 요건 중 2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을 월 10회 제공합니다.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월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을 제공합니다.

1. 전월에 이 예금의 월 평잔 50만원 유지 시
2. 전월에 이 예금에서 KEB하나은행 적금상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3. 전월에 이 예금으로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시
4.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결제 시
5. 전월에 이 예금에서 각종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
6.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

(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대상거래)

-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
(타행은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)